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 6 / 26 통권 168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상속·증여 세금상식 ①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부당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하자
-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상속·증여 세금상식 ①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 용하세요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내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원천징수함 (p.11)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면세(부가세 면제)는 국민복지후생및 순수노동적업무등 생산요소적용>

개념, 분류	열거범위, 부가세 면제 이유 등(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열거범위)
생산요소 비용 등	근로제공, 토지, 자본, 우표, 인지, 복권, 공중전화, 어린이집 임대
미가공식료품	국민 대다수의 먹거리에 10% 부가세 제외, 식용의 농·축·수·임산물 등(채소, 과일, 육류 등)
수도물, 연탄 등	주로 국민 대다수 서민층 사용 : 10% 부가세 면제로 소비자가격 10%인하
의료보건, 위생품	모든 합법적인 의사·수의사의 진료·치료 등(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성형·미용의료 제외)
교육용역	주무관청 인허가 등록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국민의 교육권 보호, 10% 인하)
대중교통 등	중산층, 서민층의 대중교통여객운송(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관광 유흥수단 제외)
도서신문 등	책, 신문값 10% 인하로 국민의 교육권 보호, 뉴스·통신·방송(광고는 제외)
금융·보험용역	중산·서민층 사용, 생산요소 필수비용으로 이자금액의 10% 인하
주택임대료	중산·서민층 사용, 주거비를 10% 인하하는 목적(사업용도는 제외)
순수인적용역	물적·인적 시설 없는 단순노동 제공(저술 등 연예, 음악, 직업운동 등, 고객모집 영업 실적급)
창작예술문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등(문화예술 보호)
도서, 과학, 기술 등	과학관, 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민속문화지원(문화예술보호)
종교자선단체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재화·용역 등, 국가 등 제공

(안사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81호 / 주간 26호

2024. 6. 2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면세(부가세 면제)는 국민복리후생 및 순수 노동적 업무 등 생산요소에 적용함	표지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기숙사동 리모델링 공사 관련 질의 건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소모품 부가세 공제 여부 - 영세울건과 일반매입건 혼재시 부가가치세 신고 -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3
눈에맞는 절세미인	부당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하자	4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속세·증여세 개편 관련 정치권 입장차 - 산업계 요구를 담은 혁신형 R&D 조세지원제도 건의안	6 7
직장인 Survival	그만둬도 되면 계속할 수도 있다	8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9 10
세정뉴스와 해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 8000만원부터'	11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내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원천징수함	10
세무정보	-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상속·증여세금상식 ①	12 18
회계정보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34
노무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8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Q** 당사는 A업체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후 당사에서 정산금액을 산정한 금액과 A업체에서 정산을 요청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 A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이슈사항

- A업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당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A업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많아 A업체 대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 문의사항

- A업체에서 제공한 용역 중 노무비에 대해서만 우선 정산을 할 경우 A업체의 노무비 대장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증명자료가 될 수 있는지

- A업체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대금지급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A**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승인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한데 거래사실 및 내용이 입증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증빙자료 및 발급가능 여부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동 리모델링 공사 관련 질의 건

**Q** 당사의 기존 기숙사에 벽지공사, 전기공사, 페인트칠, 타일보수공사 등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및 계정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 등을 증가시키는 수선이 아닌 건물의 원래상태로의 복구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로 처리하시면 되므로 수선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소모품 부가세 공제 여부

**Q** 당사는 현재 테스트 차량 관련 유지비 및 수선비 등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차량관련 소모품 (가로바, 선바이저, 등등) 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 후 사용하려 하는데, 이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테스트용 차량관련 소모품비도 테스트차량 유지비 및 수선비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건과 일반매입건 혼재시 부가가치세 신고

**Q** 당사는 영세율 매출(로열티)과 일반 매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영세율매출이 있으면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므로, 다른 매출이 추가로 있어도 함께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상증세 관련 예규(상속증여-382, 2013.7.22)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 수혜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A**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당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하자

상담실 백종훈 차장

우리들은 가끔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한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세당국 등에 불복을 청구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당한 경우 여러 가지의 절차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크게 행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와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구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행정적 절차에 의한 구제제도

행정적 절차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가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형식과 내용에 제한이 없다. 즉,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어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한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살펴보고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뒤 이의가 있을 때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인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시 납세자 선택에 의거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 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현행 세법에는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행정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안될 경우 법적인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는 1단계로

- 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②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③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④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1단계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 ⑤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1단계 방법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단계 방법에 의해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단계 방법 중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각각의 단계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인데, 이 기간을 지켜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청구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자체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상속세·증부세 개편 관련 정치권 입장차

	대통령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현행 : 대주주 할증 포함시 최고 60%, 제외시 50%	최고세율 30% 수준까지 인하*	상속세율 인하 및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세제 완화는 찬성·부자감세에는 반대, 세수확충안 우선
종합부동산세 현행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	폐지* * 6월 1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언급 내용	전면 폐지 대신 다주택자 종과세 부담 인하	실거주용 1주택자 증부세 폐지 등 완화에는 공감

### 화

#### 상속세·증부세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

##### 종합부동산세

- 폐지 시 세수악화로 인한 지방 재정교부금 급감
- 고가1주택 혹은 합산 공시가격 초고가 주택 보유자 과세
-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하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

##### 상속세(최고세율 현행 50% ⇒ 30%대(대주주 할증 60%))

- 부의 재분배 효과 감소 (대물림 심화 우려·부자감세)
- 과세대상 소수 불과
- 세수감소

\* 국세청



## 산업계 요구를 담은 혁신형 R&D 조세지원제도 건의안

구분	건의안
기업 R&D 투자확대	①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위탁연구 30% 특별세액공제 도입
	② R&D투자 증가분의 2~10%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세액공제' 도입
	③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확대(3년 → 6년)
연구인력 사기진작	④ 연구인력 소득세 비과세 2배 확대(240만원 → 480만원) 연구인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700만원 → 1,000만원)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10년간 면제
	⑤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대한 2,000만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분	내용
합병·분할 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li> <li>•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li> </ul> </li> <li>-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li> <li>•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li> <li>•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li> </ul> </li> </ul> <p>*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p>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 31)</li> <li>-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 32)</li> <li>-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44)</li> <li>-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38의 2)</li> </ul>

※ 국세청



## 그만둬도 되면 계속할 수도 있다

"그만두면 안 돼",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 하고 이를 악물며 버티다가 막대기가 똑 부러지듯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지면 안 돼"라는 사고방식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 "그만둬도 괜찮습니다"라고 조언하면 깜짝 놀라면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야 돼"라는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그만둬도 돼"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더하면 선택지가 늘어나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러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어깨에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해볼까?' 하고 계속할 수도 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4일 (금)	6월 17일 (월)	6월 18일 (화)	6월 19일 (수)	6월 20일 (목)
미	달	러	(USD)	1371.00	1377.70	1380.40	1380.50	1380.80
일	본	엔	(JPY)	872.58	874.56	875.22	874.62	874.01
영	국	파운	(GBP)	1749.33	1747.54	1754.07	1754.55	1756.45
캐	나	다	(CAD)	997.53	1003.13	1006.01	1006.49	1007.48
홍	콩	달	(HKD)	175.53	176.35	176.74	176.83	176.86
중	국	원	(CNH)	189.12	189.50	189.84	189.88	189.84
유	로	화	(EUR)	1472.45	1474.76	1482.00	1482.66	1483.88
호	주	달	(AUD)	909.52	911.49	912.86	919.27	921.61
싱	가	폴	(SGD)	1014.73	1017.95	1021.12	1021.91	1022.28
말	레	이	(MYR)	291.24	291.92	292.49	292.85	293.38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내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원천징수함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 질 의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국내원천소득을 일차적으로 지급받는 국외투자기구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내국법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지

### 회 신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 질 의

-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기준법무기본-137, 2023.10.12

### 질 의

- 상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며 새로운 계약

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 ■ 회 신

• (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2023.9.26.)

•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안이 타당합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 ■ 질 의

• 신청인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펀드를 통한 간접 취득이 아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함

•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0%이며, 전환가격은 10,000원, 전환청구일 현재 주가는 20,000원, 매각가격은 25,000원임

질의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제1안) 전환 당시 전환가액

(제2안) 전환사채 취득가액

(제3안)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 8000만원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 매출을 포함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 7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1억400만원으로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났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 세금 신고한 상속재산 39.1조원... 부동산이 약 69%

지난해 상속세 대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이 총 39.1조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3년 이래 직전 연도보다 신고인원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속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보다 2.4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20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은 2003년 4623억원에서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동안에는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8억원,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310.2억원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 18.5조원(47.6%), 토지 8.2조원(21.2%)으로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7.9조원(29.0%), 토지가 5.0조원(18.4%)으로 부동산 비중은 47.4%에 달했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원이었으며, 5000만원 이하 증여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는 63건(0.5%)으로 나타났다.

#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국세청, 2024. 6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통지)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 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 명, 74.1%↑)한 249천 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부가령 제68조 ①항)
  -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 원 → ('23.7월~) 1억 원 → ('24.7월~) 8천만 원
  -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③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됩니다.

- (품목 확대) '24.7.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sup>1)</sup>의 적용대상 품목<sup>2)</sup>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 1)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2)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개정)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

### | 비철금속 대상품목 관련법령(조특법 제106조의9)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
- (전용계좌 사용)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 가능

- (미사용 시 불이익)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를 개선합니다.**

- (가맹점가입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4.5.30. 시행)
  -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처리
  -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발급사실 일괄조회)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 건에서 100 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국세행정역량강화T/F 과제)
  -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 - 8,000만 원 → 1억4백만 원('24.7월부터) *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기,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1.7.1.이후) 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 '21.7.1.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공급대가 × 0.5%*
납부 (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만 원~1억 4백만 원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장·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 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 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 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 참고2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시행일	의무발급 대상자
201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1.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2012.1.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14.7.1.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19.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2.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3.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4.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 (세액공제) 발급건수 당 200 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위반 시 가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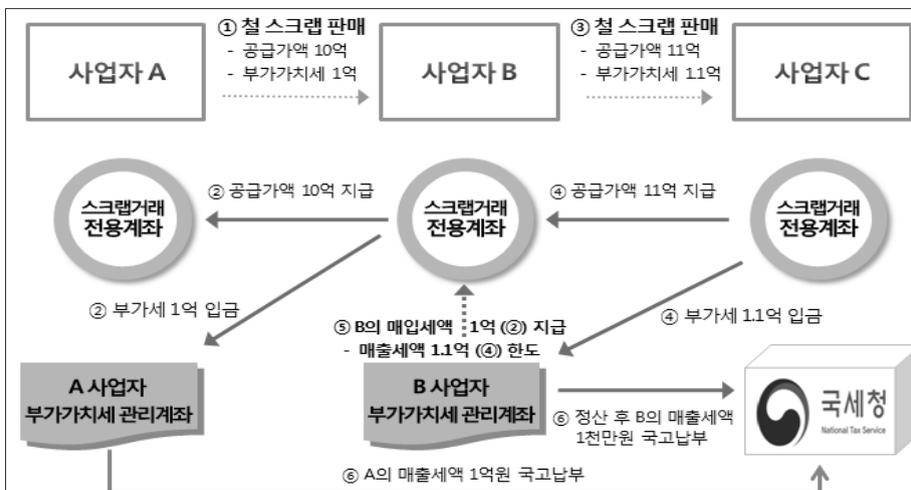
구분	가산세율	내용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한 경우
종이발급	공급가액의 1%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참고3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거래 흐름도



□ 품목별 제도시행 연혁

품 목	적용시기	정 의
금지금	'08. 7. 1.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고 금	'09. 7. 1.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
구리스크랩	'14. 1. 1.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함유량 40% 이상
금스크랩	'15. 7. 1.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철스크랩	'16.10.1.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비철금속류	'24. 7. 1.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

**참고4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홈택스 개선**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방법
  - 업종에 따른 가맹의무 확인하여 가맹점 가입 “여” 로 체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 가맹점 가입 처리  
(경로)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일괄조회
  - 발급사실 조회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엑셀양식에 입력한 후 업로드하여 조회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일괄조회

# 상속 · 증여 세금상식 ①

- 국세청, 2024. 6

## I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고민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Q3과 Q5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속경로 :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 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 고민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 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 고민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 Q1에서 알려 드린대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원 ~ 3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 배우자만 있을 때

공제금액 7억원 ~ 32억원

기본 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기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 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고민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 ●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00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것입니다.
-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재산 중에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 평가 :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것

#### ●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 ·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어진 거래만 봅니다.

⇨ 매매·경매 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음

#### ●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3순위는 공시가격입니다.

-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아파트·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5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고민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시겠다고 합니다. 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납니다.

-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 Q3에서 본 것처럼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 법정상속지분 :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 간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5할 가산(예: 배우자와 자녀2명, 1.5:1:1)

- ⇒ (예시) 아파트 가격 15억원(그 외 상속재산 없음), 상속인 : 배우자, 자녀1
-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시 : 10억원 공제(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시 : 14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9억원(Min(15억원 × 60%, 15억원))]

## 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 고민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결정하고, 집안사정상 제가 그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sum_{n=1}^5 \frac{(\text{부동산가액} \times \text{연 } 2\%)}{(1+0.1)^n}$$

무상 거주한 기간 동안 위 식으로 계산한 임대료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과세하고, 만약 무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주기로 계산

#### ◎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 고민

저는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요건에 맞으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됩니다.

#### ◎ 요건①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기간도 포함됩니다.



#### ⇒ 일시적 2주택

- 이사,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함. 이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포함됨

#### ◎ 요건②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이 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8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 고민

저는 계속 1주택자였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적도 없어 종부세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1채를 갑자기 상속받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 ●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인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됩니다.

⇒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함  
자세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을 참조

#### ●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 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다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 고민

저는 2주택이 필요가 없어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생각한다면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 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할 것
- ②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밖에 안됐다면 상속 이 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고민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만 상속받아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4.1일 사망시 신고기한은 10.31일, 4.28일 사망시에도 신고기한은 10.31일

⇒ 온라인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하는 금액은 총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총 세금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총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합니다.
-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인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 분납 예시 (총액 4천만원, '23. 4. 1 일 사망, '23. 10.31 일에 신고)  
 '23. 10. 31 일에 신고하면서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12. 31 일까지 잔여 세금 납부

⇒ 연부연납예시 (총액 6천만원, '23. 4.1 일 사망, 5년 선택)  
 '23.10.31 일에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24년 ~'28년 동안 매년 10.31일까지 1천만원+ 이자납부

II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체크

-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서면4팀-1036, 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 미디어 내용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구분	보험계약자	보험금수령인	과세여부
CASE1	아버지	자녀	상속세○
CASE2	자녀	자녀	상속세×

### ● 팩트체크

-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원으로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0. 25. 심○○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상속2013-0004 (2013.05.21)

처분청이 직출한 쟁점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보험1, ○○보험2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보험3, ○○보험4, ○○보험5, ○○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중략)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임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미디어 내용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팩트체크

- 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접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①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심사증여2001-0105(2001.11.30.)**

채무명의를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미디어 내용**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 팩트체크**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와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



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음

-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조심2008서0806 (2009.0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 미디어 내용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음

● 팩트체크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재산세과-4168(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 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07.12)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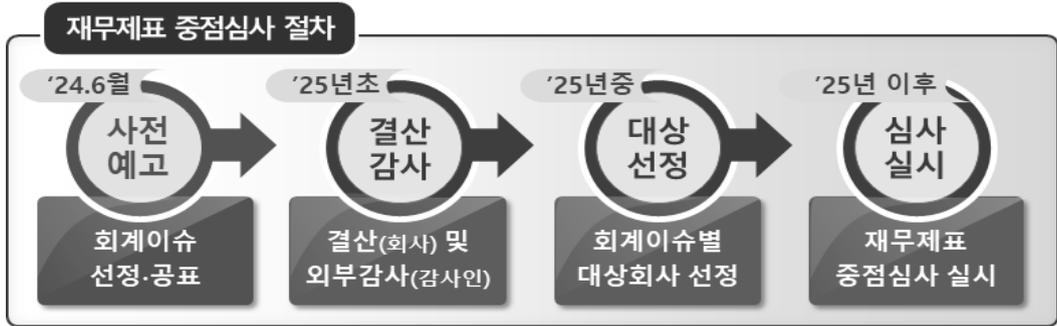
-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음
-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h3>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h3> <p><b>5단계 수익인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과의 계약조건 관련 사실 및 상황 등을 종합적 고려</li> </ul> <p>계약 식별 → 수행 의무 → 가격 산정 → 가격 배분 → 수익 인식</p> <p><b>관련 주식 공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의 구분, 계약잔액, 수행의무 등</li> </ul> <p>※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p>	<h3>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h3> <p><b>비시장성 자산 인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시 분류 및 측정의 적정성</li> </ul> <p><b>비시장성 자산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법의 일관된 적용, 합리적 가정 및 투입변수 등</li> </ul> <p><b>관련 주식공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 측정 관련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li> </ul> <p>※ (업종): <b>全 업종</b></p>
<h3>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h3> <p><b>5단계 수익인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li> </ul> <p><b>관련 주식 공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특수관계의 성격</li> <li>· 거래금액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li> <li>·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당기 중 대손상각비 등</li> </ul> <p>※ (업종): <b>全 업종</b></p>	<h3>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h3> <p><b>가상자산 발행기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의적으로 수익 및 자산 과대계상 금지, 유보토큰 주식공시</li> </ul> <p><b>가상자산 보유기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한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li> </ul> <p><b>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여부 고려하여 자산부채계상</li> </ul> <p>※ (업종): <b>全 업종</b></p>

##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
  -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



※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 ('13년) 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공표해 왔으며,
  - '14년 이후 '24.5월까지 사전 예고한 40개 회계이슈와 관련하여 총 333사를 중점 심사한 결과, 82사(24.6%)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45사(54.9%)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음
- 중점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상장회사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중점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II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 1 수익인식 회계처리

- (선정배경)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 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심사대상 업종>**

분류 코드*	해당 업종
C00000	제조업(10-34)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J00000	정보서비스업(63)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코드

□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수익인식모형(5단계)**

**핵심원칙**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

<p><b>계약 식별</b></p> <p>고객과의 실질적 계약을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승인 및 의무 확인</li> <li>-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li> <li>- 대가의 회수가능성 등</li> </ul> <p><b>계약결합 계약변경 고려</b></p>	<p><b>수행 의무</b></p> <p>고객에게 이전을 약속한 의무의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li> <li>-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예: 진행률 측정 대상)</li> </ul>	<p><b>가격 산정</b></p> <p>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 환불, 공제, 장려금 등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li> </ul>	<p><b>가격 배분</b></p> <p>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에 따라 배분</li> </ul> <p><b>거래가격의 후속변동 고려</b></p>	<p><b>수익 인식</b></p> <p>수행의무 이행시(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품권 있는 판매, 보증, 본인/대리인 라이선싱, 재매입 약정 등 추가 적용지침의 고려</li> </ul>
---	---	---	---	--

②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위반 예시

① D사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와는 상품 매입 단가 협상과 연계하여 해당 공급자에게만 제공하는 '광고 및 운송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용역 계약(매출)과 상품 매입 계약(매출원가)을 별도\* 계약으로 판단하여 용역 매출을 상품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매출로 계상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재화 및 용역의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

- ② E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상사급 거래가 존재함. 즉, 회사는 하도급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된 부품을 판매하고 있음.

원재료는 회사가 부품생산을 의뢰하면서 공급한 것으로, 가공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자산)를 통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유상사급 거래의 매출 및 매입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과대계상

\* 하도급업체는 회사의 승낙 없이 원재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가는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 보유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

- ③ F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을 영위중으로 설비의 납품 및 설치 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하고 설비의 납품은 x1년, 설치용역은 x2년에 각각 완료하였음.

다만, 계약서상 설비(제품)는 설치용역을 제공한 이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납품과 설치용역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 회사는 납품 완료시점(x1년)에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2 비시장성 자산평가

- (선정배경)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
  - 관련 기준서(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



- ② (평가방법 점검) :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
  -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 유의\*
    - \* 할인율, 목표 자본구조, 시장규모, 매출 성장률, 연구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 ③ (주식 공시사항 점검) :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회계위반 예시

- ❶ G사는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시, 과거 실적하락의 원인과 외부증거(경쟁업체 실적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래 매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 매출액을 과다하게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을 과대계상
- ❷ H사는 종속회사의 할부판매중단 등 영업에 유의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등의 손상검사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
  - \* 과거 추정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 및 가정의 합리성 평가 미실시, 할부중단 효과 미반영 등
- ❸ I사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취득 당시 원가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3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최근 논의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
    - \*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의 이익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공시 필요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 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

회계위반 예시

- ① J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해외에 비영리법인(K사)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이후 J사는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K사에 공급하고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로 매출을 인식하였음에도, 비정상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K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 ② L사는 종속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투자자와 체결함에 따라, 해당 약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를 위한 사실상의 보증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③ M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자(N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다른 특수관계자(O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 상계함으로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

4 가상자산 회계처리

- (선정배경)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 증대
  - 지난해 말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의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공개를 위해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23.12.20.)
    - \* '23.7월 발표된「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 ※ 참고로,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님
- (대상업종) 쏘 업종
- (선정기준)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 ※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 ※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23.1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회계위반 예시

- ① A사는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후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수행 의무\*)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보다 앞선 토큰 이전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 \* 백서,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수행의무 별 수익인식 시기 예시>

수행 의무	수익인식 시기
토큰 이전 (추가 의무 없음)	▷ 토큰 이전 시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을 약속	▷ 플랫폼 활성화 시점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	▷ 재화·용역 제공시

- ② B사는 가상자산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보관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
  - \* 발행 후 내부유보한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 ③ C사(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수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III 향후 계획**

-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1 수익인식 회계처리**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수익인식모형(5단계)**

- (1) 계약의 식별 : 의무, 권리,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가능성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속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가능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가능
  -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적 실질 존재
  -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
- (2) 수행의무 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예시 : 진행률 측정대상)
- (3) 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사용)
  - 유의적 금융요소(현재가치로 측정)



- 비현금대가(공정가치 측정 원칙)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차감 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4) 거래가격의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
- 할인료(모든 수행의무에 배분 또는 일부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 이행

- 한 시점에 이행
- 기간에 걸쳐 이행
  -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소비
  -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
  - 기업 대체적 용도 없고, 수행완료 부분에 지급청구권

-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
  -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한 복합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문단 4.3.3.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분리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는 사업결합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등이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구분 인식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
    - \* (시장접근법)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산, 부채,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한 시장 거래가격 고려
    - (원가접근법)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 반영
    -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장 기대를 반영 등
  -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을 공시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은 기본적으로 손상징후 검토결과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지만,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에는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

### ③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성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

\* 대가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을 의미

- (1) 거래 금액
- (2)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가)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나)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 [가상자산 발행기업]

- (개 발) 가상자산(토큰) 및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 등)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 완성하여 사용·판매할 의도, ③ 사용·판매할 능력, ④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⑤ 사용·판매시까지 기술적·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⑥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수익인식)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를 적용하여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수익 인식 전까지는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

\* 백서(White paper),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 발행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회계처리를 오류로 간주

- (유보토큰) 생성되었지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업이 보관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다만,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

[가상자산 보유기업]

- (분 류) 가상자산을 취득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토큰의 종류별 회계처리>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판매 목적 외	무형자산, 기타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무형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으로만 분류 가능

- (최초 측정) 취득 방식이나 경로에 따라 측정 방식이 상이

가상자산 최초 측정 방법

- (유상취득) 구입가격에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 (채굴 등)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 가동비 등)
- (용역제공 등) 가상자산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용역 등의 개별 판매가격)
- (Airdrop) 수령 당시 ① 플랫폼 내에서 재화·용역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②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①,②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영(0)으로 인식)

- (후속 측정) 취득한 토큰의 분류 방식에 따라 상이

가상자산 후속 측정 방법

-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 (무형자산)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 가능 (같은 유형은 일관되게 적용)
  - \* K-IFRS 적용 기업만 가능,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실은 당기손실 처리
- (기타자산)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 (당기손익 반영), 그 외 원가로 측정
- (금융자산)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분류·측정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 (자산·부채 계상 여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
  - \* 경제적 자원의 통제(Control of an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하나의 지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님)
    - \*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 고객이 매매를 위해 예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등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하는 경우도 통제권 유무를 판단
    - ※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발행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회계정책(기준서 제1008호) 변경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거나 간편 소급법\* 적용 가능
    - \*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



**붙임2 회계이슈 선정 현황**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퇴직급여부채 측정</li> <li>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li> <li>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부채 분류</li> <li>④ 장기공사 수익인식</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매출채권 매각 회계처리</li> <li>⑥ 특수관계자 거래</li> <li>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li> <li>⑧ 이연법인세자산</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li> <li>⑩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li> <li>⑪ 영업현금흐름 공시</li> <li>⑫ 유동·비유동 분류</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⑬ 비시장성 자산평가</li> <li>⑭ 수주산업 공시</li> <li>⑮ 반품·교환 회계처리</li> <li>⑯ 파생상품 회계처리</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⑰ 개발비 인식·평가</li> <li>⑱ 국외매출 회계처리</li> <li>⑲ 사업결합 회계처리</li> <li>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㉑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li> <li>㉒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li> <li>㉓ 비시장성 자산평가</li> <li>㉔ 무형자산 인식·평가</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新리스크기준서 적용</li> <li>㉖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li> <li>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li> <li>㉘ 유동·비유동 분류</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㉙ 재고자산 회계처리</li> <li>㉚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외) 평가</li> <li>㉛ 국외매출 회계처리</li> <li>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㉝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li> <li>㉞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li> <li>㉟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li> <li>㊱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li> </ul>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㊲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li> <li>㊳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재성</li> <li>㊴ AC금융자산 손실충당금</li> <li>㊵ 사업결합 회계처리</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㊶ 매출채권 손실충당금</li> <li>㊷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li> <li>㊸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li> <li>㊹ 우발부채 공시</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㊺ 수익인식 회계처리</li> <li>㊻ 비시장성 자산평가</li> <li>㊼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li> <li>㊽ 가상자산 회계처리</li> </ul>

\* 심사대상 재무제표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2024. 6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24.7.1.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②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①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



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 '24.7.1.)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③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시행일: '24.7.1.)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시행령 별표 24)

-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시행일: '25.1.1.)